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택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3월 31일(금요일) 오전 11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6 (관양동) 평촌 디지털 엠파이어 904호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보고사항》

영업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가. 제 1호 의안 : 제 18기(2022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1)

다.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라.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마.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29 조에 의거하여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직접행사 하시거나 서면 위임장에 의거하여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때에는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16일

주식회사 세니젠

대표이사 박 정 응 (직인생략)

주 주 총 회 참 석 장

실주주명	(인)	(주)세니젠 제 18 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주식수계	주	일 시	Tel: 070-5221-1773	장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의결권수	주		2023.03.31.		흥안대로 427 번길 16(관양동)
무의결권수	주		오전 11:00		평촌 디지털 엠파이어 904 호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

- 수 임 인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본인 _____ 는 귀사의 주주로서 금번 주주총회에 위에 기재한 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본인이 귀사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및 수임인에게 위임되는 주식의 내용 및 주식의 내용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보유주식 및 의결위임 주식내역

- 보유 주식 총수 : 보통주 주
- 의결 위임 주식수 : 보통주 주

2. 위임한 권한의 내용

- 2023 년 03 월 31 일 제 18 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인정 회의 발언, 투표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주주 제반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항
-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23 년 월 일

위임인 주주 : (인)

(주)세니젠 귀중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설명서

1)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전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18(당)기 (2022 년)	제 17(전)기 (2021 년)
자 산		
I. 유동자산	10,007,424,744	15,388,437,797
1. 현금및현금성자산	3,526,546,092	9,769,524,962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94,224,365	3,706,519,537
3. 기타유동금융자산	2,650,000	2,850,000
4. 기타유동자산	164,817,135	201,288,717
5. 당기법인세자산	6,835,290	725,870
6. 재고자산	2,012,351,862	1,707,528,711
II. 비유동자산	5,627,563,988	1,956,337,435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6,339,262	259,762,185
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28,922,385	88,256,312
3. 유형자산	5,153,037,372	1,586,021,256
4. 무형자산	79,264,969	22,297,682
[자산총계]	15,634,988,732	17,344,775,232
부 채		
I. 유동부채	25,191,494,447	24,391,590,18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41,432,488	1,561,263,644
2. 계약부채	1,185,816,492	1,021,775,645
3.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022,968,815	7,687,610,818
4. 유동성파생상품부채	12,686,024,387	13,951,432,935
5. 기타유동부채	58,654,840	44,437,540
6. 유동리스부채	396,597,425	125,069,599
II. 비유동부채	3,367,208,458	2,119,551,678
1. 장기차입부채	1,306,520,000	400,000,000
2. 순확정급여부채	1,509,113,994	1,602,838,447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40,194,166	-
4. 비유동리스부채	312,463,498	52,489,674
5. 복구충당부채	98,916,800	64,223,557
[부채총계]	28,558,702,905	26,511,141,859
자 본		
1. 자본금	1,342,449,500	1,342,449,500
2. 자본잉여금	3,061,995,040	3,061,995,040
3. 기타자본	494,074,487	312,493,467
4. 결손금	(17,822,233,200)	(13,883,304,634)
[자본총계]	(12,923,714,173)	(9,166,366,627)
부채 및 자본총계	15,634,988,732	17,344,775,232

-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18(당)기 (2022 년)	제 17(전)기 (2021 년)
I. 매출액	26,757,764,411	25,221,185,490
II. 매출원가	22,862,051,324	21,606,078,136
III. 매출총이익	3,895,713,087	3,615,107,354
IV. 판매비와관리비	7,978,123,750	6,480,925,742
V. 영업손실	(4,082,410,663)	(2,865,818,388)
VI. 영업외손익	17,558,091	(1,415,202,936)
기타수익	114,229,964	56,499,537
기타비용	17,349,654	14,758,824
금융수익	1,348,815,362	137,036,959
금융비용	1,428,137,581	1,593,980,608
VII. 법인세차감전손실	(4,064,852,572)	(4,281,021,324)
VIII. 법인세비용	-	-
IX. 당기순이익(손실)	(4,064,852,572)	(4,281,021,324)
X. 기타포괄손익	125,924,006	78,081,74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25,924,006	78,081,742
XI. 총포괄이익(손실)	(3,938,928,566)	(4,202,939,582)
XII.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실	(1,514)	(1,659)
희석주당손실	(1,514)	(1,659)

- 자본변동표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결손금)	총 계
2021년 1월 1일 (전기초)	1,254,373,500	1,698,963,900	97,700,981	(9,680,365,052)	(6,629,326,671)
유상증자	88,076,000	1,363,031,140			1,451,107,140
당기순이익(손실)	-	-	-	(4,281,021,324)	(4,281,021,32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78,081,742	78,081,742
총포괄손익	-	-	-	(4,202,939,582)	(4,202,939,582)
주식보상비용	-	-	214,792,486	-	214,792,486
2021년 12월 31일 (전당기말)	1,342,449,500	3,061,995,040	312,493,467	(13,883,304,634)	(9,166,366,627)
2022년 1월 1일 (당기초)	1,342,449,500	3,061,995,040	312,493,467	(13,883,304,634)	(9,166,366,627)
당기순이익(손실)	-	-	-	(4,064,852,572)	(4,064,852,57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25,924,006	125,924,006
총포괄손익	-	-	-	(3,938,928,566)	(3,938,928,566)
주식보상비용	-	-	181,581,020	-	181,581,020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1,342,449,500	3,061,995,040	494,074,487	(17,822,233,200)	(12,923,714,173)

- 현금흐름표

(단위: 원)

과 목	제 18(당)기 (2022년)		제 17(전)기 (2021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13,380,943)		(2,588,379,062)
1. 당기순이익(손실)	(4,064,852,572)		(4,281,021,324)	
2.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한 조정항목	1,591,664,529		2,869,736,318	
대손상각비	(99,636,834)		6,664,802	
재고자산평가손실	29,885,891		166,634,692	
감가상각비	784,018,079		588,711,673	
무형자산상각비	27,487,257		14,159,550	
외화환산손실	5,788,234		4,817,190	
이자비용	1,413,179,270		907,810,450	
퇴직급여	461,529,220		418,956,319	
파생상품평가손실	-		675,319,740	
기타장기종업원급여	155,937,866		-	
주식보상비용	181,581,020		214,792,486	
리스상환손실	38,567		3,104,440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645,550		1,282,503	
유형자산처분손실	13,766,106		352,439	
외화환산이익	-		(2,313,549)	
이자수익	(77,559,240)		(27,762,84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3,181,929)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60,183)		-	
리스상환이익	(3,420,849)		(1,907,338)	
파생상품평가이익	(1,265,408,548)		(100,886,234)	
복구공사이익	(12,924,948)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753,578,321)		(1,117,953,944)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553,761,934)		(439,622,706)	
미수금의 감소(증가)	343,661		125,271,55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23,010,372)		405,441	
선급금의 감소(증가)	59,481,954		(116,182,581)	
상품권의 감소(증가)	200,000		(2,650,00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311,527,113)		158,077,344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8,894,246		(635,642,787)	
예수금의 증가(감소)	14,217,300		7,955,28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315,526,457		(92,356,366)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164,040,847		35,519,364	
정부보조금의 증가(감소)	-		20,833,338	
복구비용의 지급	(2,910,000)		-	
퇴직금의 지급	(429,329,667)		(179,561,830)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15,743,700)		-	
4. 이자의 수취	44,468,343		4,822,040	
5. 이자의 지급	(24,973,502)		(64,145,162)	
6. 법인세의 환급(납부)	(6,109,420)		183,01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63,020,582)		(509,501,37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8,498,400		73,560	

과 목	제 18(당)기 (2022년)		제 17(전)기 (2021년)	
임차보증금의 감소	18,246,400		-	
기타보증금의 감소	252,000		73,56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581,518,982)		(509,574,932)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1,251,440		41,251,440	
토지의 취득	432,335,313		-	
기계장치의 취득	459,995,000		136,979,636	
건물의 취득	1,943,775,846		-	
공구와기구의 취득	193,658,087		20,900,000	
비품의 취득	243,128,024		177,378,584	
시설장치의 취득	149,908,000		41,500,00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5,900,000		46,227,272	
소프트웨어의 취득	42,227,272		-	
임차보증금의 증가	51,000,000		40,000,000	
기타보증금의 증가	8,340,000		5,338,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9,210,889		12,249,166,39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40,000,000		16,654,968,254	
단기차입부채의 증가	-		2,201,710,754	
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증가	-		13,000,003,500	
장기차입부채의 증가	940,000,000		-	
유상증자	-		1,453,254,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0,789,111)		(4,405,801,861)	
단기차입부채의 감소	-		4,087,352,999	
리스부채의 상환	400,789,111		295,620,722	
유동성장기부채 발행비용	-		20,681,280	
주식발행비용	-		2,146,86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6,237,190,636)		9,151,285,959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790,358,300		636,758,792
VI.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788,234)		2,313,549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547,379,430		9,790,358,300

- 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구 분	제 18(당)기 (2022년)		제 17(당)기 (2021년)	
미처리결손금		(17,822,233,200)		(13,833,304,634)
전기이월결손금	(13,883,304,634)		(9,680,365,052)	
당기순이익(손실)	(4,064,852,572)		(4,281,021,32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5,924,006		78,081,742	
결손금처리액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822,233,200)		(13,883,304,634)

* 기타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제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별첨 1)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추천인)	약 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 관계
감사 (재선임)	최영봉	1973.04.21 (이사회)	우인회계법인 대표이사 ('15.10~현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03.10~'15.10) ㈜SPC삼립 ('98.02~'03.09)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대학원 석사 ('96.03~'98.02)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89.03~'92.02)	-	-

4)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기(2023년도) 승인요청액	18기(2022년도) 승인액(*1)	18기(2022년도) 집행액	비 고
10억원	10억원	5.9억원	5명(사외이사 2명)

(*1) 해당 인원 수에는 사임 및 신규선임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입니다.

5)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9기(2023년도) 승인요청액	18기(2022년도) 승인액	18기(2022년도) 집행액	비 고
5,000만원	5,000만원	450만원	1명

별첨 1. 정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p>제 1 조[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세니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ANIGEN Co., Ltd." 라 표기한다.</p>	<p>제 1 조[상 호] 회사는 "주식회사 세니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ANIGEN Co., Ltd." 라 표기한다.</p>	기재정정
<p>제 2 조[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환경위생제품 제조 및 판매업 1.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 식품안전분석 및 컨설팅서비스 1. 식품관련 실험기기 및 소모품 판매 1.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판매 1. 각 호에 관련된 제품의 도,소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1. 학술연구 용역업 1.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1. 액체 여과기 제조업 1.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 수처리 시설 제조 및 판매업 1. 살균소독 장치 제조 및 판매업 1. 미생물 유전자 검사키트 제조 및 판매업 1. 유전체 분석서비스 1. DNA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종합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1. 렌탈임대업 	<p>제 2 조[목 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환경위생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3. 식품관련 실험기기 및 소모품 판매업 4. 식품안전분석 서비스업 5. 식품산업관련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업 6. 학술연구 용역업 7. 조명장치 제조업 8. 액체 여과기 제조업 9. 광학기기 제조업 10.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1. 수처리 시설 제조 및 판매업 12. 살균소독 장치 제조 및 판매업 13. 미생물 유전자 검사키트 제조 및 판매업 14. 유전체 및 DNA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 15.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6.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7.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8.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9. 종합무역업 및 무역중개업 20. 렌탈임대업 21.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조문정비 (조문번호 및 조문의 명확화)
<p>제 6 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 로 한다.</p>	<p>제 6 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 (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p>	설립 시 액면가 부기 하여 명확히 표현
<p>제 8 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p>	<p>제 8 조[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권은 1 주권, 5 주권, 10 주권, 50 주권, 100 주권, 500 주권, 1,000 주권 및 10,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p>	기재정정
<p>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의 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가 배제된 사항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
<p>제 9 조[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 9 조[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기재정정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제 9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p> <p>1. 우선주식의 총수는 위 제 5 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한다.</p> <p>2.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p> <p>3. 우선주식은 위 제 2 항에 의한 배당을 받고, 잔여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p> <p>4. 우선주식은 위 제 2 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5.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p> <p>6.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p> <p>7.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p> <p>8.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9. 전환주식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1)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의 범위로 하여 우선주식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p> <p>3) 우선주가 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p> <p>4) 그 외에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권 행사방법, 절차, 전환가격 및 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9 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주식의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한 종류주식】</p> <p>1. 회사는 이익배당,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2. 종류주식의 총수는 위 제 5 조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00 분의 50 이하로 한다.</p> <p>3.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p> <p>4. 종류주식은 위 제 3 항에 의한 배당을 받고, 잔여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p> <p>5. 종류주식은 위 제 3 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p> <p>6.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다만,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p> <p>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p> <p>8.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9.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 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10.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1)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내의 범위로 하여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p> <p>3) 종류주식이 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p> <p>4) 그 외에 이사회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권 행사방법, 절차, 전환가격 및 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종류주식으로 용어 통일 및 표준정관에 부합하는 종류주식 조항으로 수정</p> <p>기존 제11호는 제9조 2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10. 상환주식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1) 우선주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2) 상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내의 범위로 하여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및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p> <p>3) 상환가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단리 또는 복리연 0% 이상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p> <p>4)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권 행사방법 및 절차, 상환가액 산정방법, 상환가액 부족 시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11. 회사는 제 9 항 및 제 10 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종류주식 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p> <p>1) 종류주식의 주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2) 상환청구기간은 당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내의 범위로 하여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및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p> <p>3) 상환가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단리 또는 복리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p> <p>4) 이사회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권 행사방법 및 절차, 상환가액 산정방법, 상환가액 부족 시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p>	<p>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로 하향조정</p>
<p>제 10 조 [신주인수권]</p> <p>1.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p> <p>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제 10 조 [신주인수권]</p> <p>1. 주주는 신주 발행함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p> <p>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7)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3.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기존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30%로 하향 조정. 개인에게도 부여되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정정</p> <p>기존 제5호, 제7호는 제4호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p> <p>9)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3.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2.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4.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p> <p>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p>	<p>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2.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4.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p> <p>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p>	<p>기재정정</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p> <p>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p> <p>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1 조의 2[우리사주매수선택권]</p> <p>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p> <p>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6 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5.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p> <p>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p> <p>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p>	<p>제11조 신주인수권 조항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야 별도 조항으로 기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가능</p>
<p>제 12 조[신주의 배당기산일]</p> <p>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12 조[신주의 동등배당]</p> <p>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p>	<p>개정된 상법 반영</p>
<p>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p> <p>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p>	<p>제 14 조[명의개서대리인]</p> <p>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p> <p>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p> <p>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p>	<p>기재정정</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4.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4. 제 1 항에서 제 3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p> <p>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3. 제 1 항 및 제 2 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4. 제 1 항에서 제 3 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기재조정
<p>제 15 조의 2 [주주명부]</p> <p>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p>	<p>제 15 조의 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p> <p>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2.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p>	소유자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전자증권법 규정 내용 반영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1.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2.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1.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15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동 항은 적용하지 않는다.</p> <p>2.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p> <p>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해당 부분 반영</p> <p>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및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및 표준정관 준용</p>
<p>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p>	<p>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p>	개인에게도 부여되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는 위임으로 정정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제12조 규정에서 다루지 않음</p>
<p>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개인에게도 부여되는 케이스를 포함할 수 있는 워딩으로 정정</p>
<p>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p>	<p>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 15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p>	<p>기재정정</p>
<p>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p>	<p>제 19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p>	<p>단서조항추가</p>

현행	개정	개정 사유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0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0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재정정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 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재정정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기재정정
제 33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재정정
제 35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 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용어통일
<신설>	제 40 조의 2 [위원회] 1. 이사회는 「상법」 제 393 조의 2 에 따라 이사 2 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내부거래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필요시 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 신설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p> <p>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8 조 내지 제 4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3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 43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용어통일
<p>제 45 조 [감사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수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p>제 45 조 [감사의 선임·해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2.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5.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임 규정 추가 및 상법에 따른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경우에 대한 내용 추가
<p>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p>제 46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상 감사임기(3년)로 변경
<p>제 50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 50 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기재정정
<p>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사장)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제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 447 조의 각 	<p>제 51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 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대표이사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 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제 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 447 조의 각 	용어통일 및 기재정정

현행	개정	개정 사유
<p>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 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7. 제 6 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8. 대표이사(사장)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 447 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7. 제 6 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8.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2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2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기재정정
<p>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p> <p>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p>제 53 조 [이익금의 처분]</p> <p>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기재정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3 항, 제 15 조, 제 15 조의 2, 제 19 조, 제 19 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8 조의 2, 제 14 조 제 3 항, 제 15 조, 제 15 조의 2, 제 16 조 제 1 항, 제 19 조, 제 19 조의 2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p>	정관 변경으로 인한 시행일 변경